

(제10-5호)

감사.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

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	구 분		감사위원회위원
	성 명		김 용 운
	임 기	시작일	2016.03.30
만료일		2017.03.30	
2. 퇴임사유	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산7천억원미만에 해당.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 전환으로 사임.		
3. 퇴임일자	2016.08.30		
4. 퇴임후 감사 (감사위원) 현황	감사수(명)	상근	1
		비상근	
	감사위원 수(명)	사외이사	
		비사외이사	
5.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없음		

기재상의 주의

주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주2) “구분”은 상근감사, 비상근감사, 감사위원회위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
주3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(제10-5호)

감사.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

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	구 분		감사위원회위원
	성 명		전 동 훈
	임 기	시작일	2014.09.27
만료일		2017.09.27	
2. 퇴임사유	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산7천억원미만에 해당.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 전환으로 사임.		
3. 퇴임일자	2016.08.30		
4. 퇴임후 감사 (감사위원) 현황	감사수(명)	상근	1
		비상근	
	감사위원 수(명)	사외이사	
		비사외이사	
5.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없음		

기재상의 주의

주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(중도사임 또는 해임 등)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주2) “구분”은 상근감사, 비상근감사, 감사위원회위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
주3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